

축산물수입신고서

처리기간	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8일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① 신고번호		② 신고일	
③ 신고기관		④ 신고시기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신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전신고	
⑤ 수입 화주	사업자등록번호	성명	
	상호	전화번호	
	주소	팩스번호	
	영업신고번호	업종	
⑥ 수출 자	수출회사명		
	주소		
⑦ 수출국		⑧ 제조회사명	⑨ 작업장번호
⑩ 세번부호		⑪ 거래품명	
⑫ 한글명		⑬ 모델·규격 (제품유형)	⑭ 용도
⑮ 배합비율		뒤쪽에 기재	
<16>B/L번호		<17>화물관리번호	
<18>입항일		<19>반입일	
<20>총 포장개수		<21>국내도착항	
<22>선(기)명		<23>검사(반입)장소	
<24>과세가격		<25>순중량	
<26>원산지(국가)		<27>선적항	
<28>선적일시		<29>검사기관	
<30>유통기한		<31>가공공정	
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날인)

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

※ 구비서류	수수료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(수입하는 축산물이 「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 검사대상 축산물로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)</li> <li>2.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(식육가공품·유가공품·알가공품으로서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한다)</li> <li>3.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(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)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(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</li> <li>4.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(「대외무역법」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)</li> </ol>	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(뒤 쪽)

번호	성분	성분배합비율(%)	번호	성분	성분배합비율(%)
유의사항		성분에 모든 원재료명을 기재하되,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,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합니다.			

가공공정	
------	--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